

EU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 포커스 : EU 사이버 복원력법(CRA) 관련 EU 기관 주요 동향
- 단신
 - [운송] EU, 자동차 순환경제 강화를 위한 폐차 규정 발효(8.13)
 - [CBAM] EU 집행위원회, CBAM 본격 시행기 이행 지원을 위한 가이드 문서 발표
 - [PPWR] 플라스틱 재활용·재생원료 관련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증거 수집 개시
 - [통상] EU, 한국과 멕시코산 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확정
 - [배터리] EU, 배터리 재활용 함량 산정·검증 위임법 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 개시
- 무역관 행사 안내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대응 웨비나(8.20, 16:30~17:30(KST))



주요 경제통상 일정

일정	내용
8.31(월)~9.1(화)	EU 국방장관 비공식 회의 개최
9.9(수)	공공조달법, 유럽혁신법 발표
9.14(월)~17(목)	유럽의회 본회의 개최

EU 사이버 복원력법(CRA) 관련 EU 기관 주요 동향

- ◎ 사이버 복원력법(CRA)에 따른 17개 디지털 제품군별 조화표준 초안 발표(8.13). 중요 제품 1은 조화표준의 요구사항 준수 시 자가 평가로 CRA 적합성 입증 가능
-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6.9.11일부터 적용되는 제조업체의 자사 제품 대상 취약점 및 심각 사고 보고 의무 개시를 앞두고 CRA 지침 문서를 발표(7.27)

□ 개요

- EU 사이버 복원력법(CRA)의 단계적 적용을 앞두고 기업의 규정 이행을 돕기 위한 EU 기관의 기술 표준 및 지침 마련 작업이 이어지는 중

<EU 사이버 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Regulation (EU) 2024/2847)>

- (개요) EU 역내 통일된 사이버 보안 규칙과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24.12.10일 발효
- (주요 의무) 제조업체의 취약점 및 심각 사고 보고 의무는 '26.9.11일부터 시작되며, 법안 본격 적용은 '27.12.11일 부
 - (제조업체) '26.9.11일부터 자사 제품에서 능동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과 심각 사고를 EU 사이버보안청(ENISA)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팀(CSIRT) 단일 보고 플랫폼([링크](#))에 통지해야 함. '27.12.11일부터는 △적합성 평가 및 선언서 작성, △CE 마킹 부착, △제품 지원 기간 명시, △출시 전 위험성 평가 의무화
 - (수입·유통업체) 제품의 사이버 보안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조업체와 EU 회원국 시장 감독기관에 보고
- (제재) 위반 강도 및 반복 여부에 따라 벌금 부과, 제품의 역내 출시 제한, 금지, 시장 회수 등 조치 가능

- 유럽 표준화기구(ENISA)는 디지털 제품군 17개를 대상으로 CRA 보안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기술 조화표준(Harmonized Standard) 초안을 공개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중소기업의 규정 해석을 돕기 위한 지침 문서를 발간하고, 적용 대상 제품 및 제조업체의 주요 의무인 △적합성 평가, △위험성 평가, △제품 지원 기간 설정, △취약점 및 심각 사고 보고 방법 등을 안내

□ 주요 내용

① CRA 17개 제품군 기술 조화표준 초안 발표(8.13)

- (개요) 유럽통신표준기구(ETSI)는 8.13일 EU CRA에 따른 17개 제품군별 조화표준의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개시
 - 조화표준은 제조업체의 핵심 의무인 적합성 평가의 주요 근거로, 이를 준수할 경우 CRA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
- (대상 제품) △브라우저, △비밀번호 관리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스마트 홈 비서, △웨어러블 기기, △인터넷 연결 장난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등
 - EU 집행위원회는 CESTI를 포함해 유럽 3대 표준화기구* 대상으로 CRA 조화표준 개발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다른 2개 기관에서는 향후 디지털 제품 공통 사항 및 일부 제품군 표준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통신표준기구(ETSI),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 **(향후 일정)** 해당 초안은 승인 절차와 유럽 표준(EN) 발간을 거쳐 EU 관보에 등재된 후 조화표준으로서 효력을 갖게 됨
- ETSI는 세부 제품군에 따라 초안 승인 절차가 '26.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현지 언론 Politico에 따르면 ETSI는 '27년 초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

② EU 집행위원회, EU CRA 지침 문서 발표(7.27)

- **(적용 제품 범위)** CRA는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제품 중, 의도된 목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사용 방법상 기기 또는 네트워크와의 직·간접적 데이터 연결을 포함한 제품이 대상*
 - * 주요 예시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기기 및 노트북·태블릿, △집적회로, △메인보드·독립형 하드웨어, △별도 공급되지만 함께 작동하도록 의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조합 등
- 특히 제품의 성능 변화로 기존 보안 요건에 영향이 있거나, 의도된 목적을 변경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경우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며 시장 내 신규 출시로 간주됨
-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 제품 등 기존 EU 규정을 통해 사이버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합성 평가)** 보안 위험도에 따른 제품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위험도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적합성 평가가 요구됨
 - * △일반 제품, △중요 제품 I, △중요 제품 II, △핵심 제품 순. 세부 내용은 [EU 이행규정\(EU\) 2025/2392](#) 참고
- 일반 제품은 제조업체의 자가 평가만으로 적합성 입증 가능하며, 중요 I 제품은 원칙적으로 제3자 인증기관 평가가 필요하나 관련 조화표준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자가 평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중요 제품 II와 핵심 제품은 인증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 적합성 평가를 진행해야 함
- **(위험성 평가·지원 기간)** 제조업체는 제품 출시 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최소 지원 기간을 설정하여 사용자에게 고시해야 함
 - 위험성 평가 시에는 CRA 부속서 I 내의 요구사항* 중 자사 제품에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기술적 보호 조치나 기능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함
 - * △(파트 1)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제품의 속성 관련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파트 2) 취약점 처리 요구사항
- 지원 기간은 최소 5년으로,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제품 구성요소 변경으로 제품을 기존 대비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지원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함
- **(취약점 및 사고 보고)** '26.9.11일부터 제조업체는 EU 시장 내 자사의 전 제품에서 악용되는 취약점이나 중대 보안 사고를 인지한 경우 ENISA와 CSIRT에 동시 통지해야 함
 - 인지 후 24시간 내에는 제한된 정보가 포함된 조기 경보를 제출해야 하며, 72시간 내에는 추가 정보 제출. 완전 보고서는 취약점의 경우 시정·완화 조치가 마련된 후 14일 내, 심각한 사고의 경우 추가 정보 제출 후 1개월 내 제출
 - '26.9.11일 이전 인지한 취약점에 대한 소급 보고는 불필요함

• 자료 : EU 집행위원회(7.27), ETSI(8.13), Politico Pro(8.13)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송지현(jhsong_a@kotra.or.kr)

□ [운송] EU, 자동차 순환경제 강화를 위한 폐차 규정 발효(8.13)

- 차량의 설계·생산부터 폐차 처리까지 자원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EU의 새로운 「폐차 규정」*이 발효됨
 - * Regulation (EU) 2026/1738 on circularity requirements for vehicle design and on management of end-of-life vehicles
 - 동 규정은 차량 부품과 소재를 재사용 및 재활용하기 쉽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폐차 자원의 회수와 신차 생산 시 재활용 원료 사용을 함께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동 규정은 폐차에서 부품 및 소재의 분리와 선별을 강화해 구리·알루미늄·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회수량을 늘리고 회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울러 중고차와 폐차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차량 추적 관리를 강화해 불법 폐차 처리를 방지하고자 함
 - 동 규정은 '26.8.13일 발효됐으나, 기업과 회원국의 제도 이행 준비를 위해 대부분의 조항은 '28.9.1일부터 적용될 예정
- 신차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생산자 책임도 강화
 - '32.9월부터 새로 승인되는 차량은 차량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량의 최소 15%가 재활용 플라스틱*이어야 하며, '36.9월부터는 해당 비율이 25%로 확대
 - * 소비자가 쓰고 버린 제품에서 회수한 플라스틱(post-consumer waste)만 인정되며, 공장 생산 과정에서 나온 플라스틱은 제외
 - 아울러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량의 20% 이상*은 폐차 또는 사용 중 교체된 부품에서 조달된 것이어야 함
 - * 상기 기준을 '32.9월까지 적용하면, 차량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량의 최소 3%는 폐차 또는 차량 사용 중 제거된 부품에서 재활용한 플라스틱으로 충당해야 함
 - 동 규정은 '29.9월부터 생산자에게 폐차 수거 및 처리 등의 비용 부담 의무를 부과 하고, '31.9월부터는 트럭·버스·트레일러와 이륜차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

• 자료 : EU 집행위원회(8.12)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노효주(hyoju.no@kotra.or.kr)

□ [CBAM] EU 집행위원회, CBAM 본격 시행기 이행 지원을 위한 가이드 문서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기(definitive period)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EU 역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10개의 가이드 문서를 발표(8.14)
 - 이번 가이드 문서는 특히 EU 역외에서 CBAM 대상 상품을 생산하는 시설 운영자와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sed CBAM Declarant), 검증기관(Verifier) 등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가이드 문서는 CBAM 공통 사항을 다룬 일반 가이드 4종과 산업별 가이드 6종으로 구성
 - 일반 가이드는 △CBAM 주요 개념 및 역할·책임 △EU 역외 사업자를 위한 주요 이행 절차 △상품 내재 배출량 계산 방법 △EU ETS 무상 할당을 반영한 CBAM 인증서 조정 방법 등을 설명

- 산업별 가이드는 시멘트, 수소,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력 등 6개 CBAM 대상 분야별 생산 공정, 가치사슬, 배출량 모니터링·보고 시 고려 사항과 실무 계산 사례를 제시

<CBAM 가이드 문서 구성>

자료(클릭 시 자료로 연결)	내용
1. CBAM 개념 소개	- CBAM의 기본 개념과 이행 절차를 소개하고, 전환기간 대비 본격 시행 기간의 주요 변화와 함께 EU 역외 시설 운영자의 역할·책임, 주요 일정 및 기한, 면제사항 등을 설명
2. EU 역외 사업자를 위한 권 가이드	- CBAM 대상 상품을 생산하는 EU 역외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배출량 모니터링의 핵심 개념을 안내하고, 세부 내용이 각 가이드의 어느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지 제시
3. 내재 배출량 계산	- CBAM 대상 상품 생산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재 배출량 모니터링·보고 의무 및 관련 권고사항을 설명
4. 무상 할당 조정 계산	- EU ETS 무상 할당을 반영해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와 해당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설명
5. 산업별 가이드 a.시멘트 b.수소 c.비료 d.철강 e.알루미늄 f.전력	- 각 CBAM 대상 산업의 생산공정과 가치사슬, 산업별 모니터링·보고 시 고려 사항을 설명하고 실제 계산 사례를 제시

- 집행위원회는 기업들이 실제 배출량 보고와 향후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 수립과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강조
- 이번 가이드 문서를 통해 전환기간 대비 변경된 내재 배출량 계산 방식,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기본값(default values) 활용 방법, EU ETS 무상 할당 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

· 자료 : EU 집행위원회(8.14)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강지숙(kjs@kotra.or.kr)

□ [PPWR] 플라스틱 재활용·재생원료 관련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증거 수집 개시

- EU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에 따른 플라스틱 재활용 및 재생원료 함량 관련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3건의 증거 수집(Call for Evidence)을 개시(8.14~9.16)
- ①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PPWR상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활용 기술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위임법으로 마련할 예정([링크](#))
- ② 아울러 한국 등 EU 역외국에서 수집·재활용된 플라스틱의 EU 내 인정 여부를 평가·검증·인증하는 방법 및 규칙을 이행법으로 수립할 계획([링크](#))
- ③ **플라스틱 포장재에 사용된 재생원료 함량의 계산·검증 방법**을 EU 차원에서 통일하고, 관련 행정부담 완화 및 재활용 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할 방침([링크](#))
- 현재 3개 법안 모두 구체적인 초안은 공개되지 않은 증거 수집 단계로, 집행위원회는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26년 4분기 중 하위법령 채택을 추진할 계획
- PPWR은 집행위원회가 '26년 말까지 재생원료 함량의 계산·검증 방법과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지속가능성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
- 특히 한국산 재생 플라스틱 또는 재생원료를 포함한 포장재를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향후 역외 재활용 원료의 추적성·검증·인증 요건 및 재생원료 함량 산정 방식을 주시할 필요

· 자료 : EU 집행위원회(8.14)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강지숙(kjs@kotra.or.kr)

□ [통상] EU, 한국과 멕시코산 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확정

- EU 집행위원회는 한국과 멕시코산 테레프탈산에 확정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8.10)
- 집행위원회는 역내 산업계 요청으로 '25.8월부터 한국과 멕시코산 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앞서 '26.4월 잠정 관세 부과에 이어 이번 발표를 통해 최종 반덤핑 관세를 확정
- 잠정 관세부과 후 진행된 추가 조사와 이해관계자 소명 과정에서 모든 대상 국가업체의 관세율이 소폭 하향 조정, 한국산 제품은 업체별로 각각 6.1%와 13.3%의 관세가 부과

<한국·멕시코산 테레프탈산의 반덤핑 세율>

구분	한국		멕시코
잠정 관세율	조사 협력 업체	6.2%	25.7%
	그 외 한국 업체	13.7%	
확정 관세율	조사 협력 업체	6.1%	24.1%
	그 외 한국 업체	13.3%	

자료: EU 집행위원회 관보(8.10)

- EU, 역내 화학산업 보호를 위해 관련 조치 확대 추세
- 집행위원회는 테레프탈산이 덤핑 가격으로 EU 시장으로 유입되어 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PET 생산에 필수 원료인 테레프탈산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재로 명시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
- 한국의 테레프탈산 대세계 수출은 '25년 기준 12억 7,300만 달러 규모이며, 이중 약 25%에 해당하는 3억 2,200만 달러 규모가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등 주요 EU 회원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신규 무역구제 조사는 총 33건으로, 이 중 화학 부문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12건을 차지. 보고서는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불공정 무역 증가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련 조치가 지속될 전망

* [43rd Annual Report on the EU'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activities\('25.7.28\)](#)

• 자료 : EU 집행위원회(8.10. [관보](#), [보고서](#))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윤윙희(unoin@kotra.or.kr)

□ [배터리] EU, 배터리 재활용 함량 산정·검증 위임법 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 개시

- EU 집행위원회는 배터리 내 코발트·리튬·니켈·납의 재활용 함량 산정·검증 방법과 증빙 문서 형식을 구체화한 위임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개시(8.12)*

(참고) EU 배터리 규정 제8조 및 위임법 추진 일정

- EU 배터리 규정 제8조는 전기차·산업용(2kWh 초과, 외부 저장 전용 제외)·SLI·LMT 배터리에 대해 코발트·리튬·니켈·납의 재활용 함량 정보 제공 및 단계적 최소 함량 준수 의무를 부과
- (적용시기) 정보 제공 의무는 전기차·산업용·SLI에는 '28.8.18 또는 관련 위임법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 부터, LMT에는 '33.8.18부터 적용하며, 최소함량 의무는 '3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의무비율) '31년 전기차·산업용·SLI에 코발트 16%·납 85%·리튬 6%·니켈 6% → '36년 LMT를 포함, 각각 26%-85%-12%-15%로 강화
- EU 집행위는 이번 초안에 대한 8.12~9.9일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6년 3분기 위임법 채택 예정

- (적용대상) 전기차·산업용·SLI*·LMT** 배터리의 재활용 함량을 배터리 모델·연도·제조공장별로 산정

* SLI(Starting, Lighting and Ignition) : 시동·조명·점화용 배터리

** LMT(Light Means of Transport) : 경량 이동수단용 배터리

- (산정방식) 제조공장에 투입되는 재활용 원료를 기준으로 해당 기간 생산제품의 재활용 함량을 산정하되, 특정 제품에 재활용 함량을 임의로 집중 배분하는 것은 제한*

* 단, 위탁처리(toll-treatment)·다자간 계약 등 재활용 원료의 공급·회수가 입증되는 적격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 대상 특정 산출물에 재활용 함량을 별도로 배분 가능

- EU 내에서 재활용되는 코발트·리튬·니켈(납 제외)에 '36년 말까지 1.3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한편, 공급망 전반에 자료 추적·보관 및 제3자 검증체계를 적용

* EU에서 재활용되는 대상 금속을 실제 물량의 130%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재활용분 10톤은 재활용 함량 산정 시 13톤으로 반영

- (보정계수) 모든 재활용 단계가 EU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EU에서 블랙 매스만 생산하고 후속 처리를 역외에서 수행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검증체계) 공급망 사업자는 재활용 함량·거래정보·EU 내 재활용 여부 등 관련 데이터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함

- 제3자 적합성 평가기관(notified body)은 재활용부터 정제·소재·셀·배터리 제조까지 공급망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생산시설 현장검증을 실시

• 자료 : EU 집행위원회([공개의견수렴페이지](#))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inji.sim@kotra.or.kr)



무역관 행사안내

□ EU 집행위원회 제2차 FAQ 기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대응 웨비나

- 목적 : '26.8.12일부 적용되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관련 주요 규정 및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실무 대응사항 안내
- 일시 : '26.8.20(목) 한국(KST) 16:30~17:30 / 벨기에(CEST) 9:30~10:30
- 프로그램 (* 한국시간 기준, 참가신청 이메일로 추후 zoom 링크 전달 예정)

시 간	내 용	연 사
16:30~16:35 (5')	개회	김세진 관장 KOTRA 브뤼셀무역관
16:35~16:45 (10')	순환경제 관련 정책 동향	신인규 환경관 주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16:45~17:30 (45')	PPWR 핵심 의무사항 및 기업 대응 - 2차 FAQ를 중심으로	강지숙 차장 KOTRA 브뤼셀무역관

- 참가신청 : 하단 링크 또는 QR 코드 스캔 통해 신청서 작성
* 참가신청 링크 : <https://forms.gle/RydEMTbhypYxAHWW9>
- 신청기한 : '26.8.19(수) 한국시간 18시
- 문의 : KOTRA 브뤼셀무역관 조기철 과장(starofjihak@kotra.or.kr)



EU 무역구제조치 동향

* 발표일 클릭 시 EU 관보로 연결됩니다.

산업	품목	CN 코드	유형	조치	대상국	발표일
화학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29163100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7.28
기타	폴리아미드 원사 (Polyamide yarns)	540245, 540261, 540251, 540231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7.28
화학	바이오디젤 (Biodiesel)	2710, 2710 3824, 3826, 1516, 1518	상계관세	재심개시	미국	'26.7.31
화학	테레프탈산 (Terephthalic acid)	29173600	반덤핑	관세부과	한국, 멕시코	'26.8.10
철강	규소망간강 와이어 (Wires of silico-manganese steel)	72292000	반덤핑	잠정관세	중국	'26.8.10



EU 분야별 의견수렴

분야	내용	수렴 기간	링크
디지털	디지털 네트워크법(DNA) 초안 의견 수렴	7.2~9.7	링크
디지털	반도체법 2.0(Chips Act 2) 초안 의견 수렴	7.2~9.10	링크
디지털	신규 클라우드·AI 개발법 초안 의견 수렴	7.2~9.29	링크
R&I	Horizon Europe 유럽 파트너십 공동사업단 이행체계 개편 위한 의견 수렴	7.10~10.16	링크
산업	EU 이중용도 수출입 규정 관련 의견 수렴	7.23~10.15	링크
화학	EU 유해 화학물질 수출입 규정 부속서 I 및 V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7.24~8.21	링크

분야	내용	수령 기간	링크
순환경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생산자 등록부 등록 및 보고 양식 이행 규정 초안 의견 수렴	8.6~9.10	링크
배터리	배터리 재활용 함량 산정·검증 위임법 초안 의견 수렴	8.12~9.9	링크
순환경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플라스틱 재활용 및 재생원료 관련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증거 수집 ①재활용 기술 지속가능성 기준 ②EU 역외 수집·재활용 플라스틱 역내 인정 여부 평가·검증·인증 방법 및 규칙 ③플라스틱 포장재에 사용된 재생원료 함량 계산·검증 방법	8.14~9.16	링크① , 링크② , 링크③



브뤼셀무역관 발간자료

(과거 보고서: [해드림 글로벌 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GMR26-045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7	EU 철강 관세율할당(TRQ) 국가별 배분 이행규정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6	CBAM 제3국 기지불 탄소가격 공제 이행법 초안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5	EU의 식품 접촉 제품에 대한 규제 추진 동향	2026. 7월
경통리포트26-14	EU K-뷰티 시장 동향 및 규제 대응 가이드	2026. 7월



브뤼셀무역관 영상자료

썸네일(※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주요 내용
	○ EU 순환경제 규제(PPWR·ESPR) 대응 웨비나 - PPWR 파트 - '26년 하반기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의 의무 사항과 구체적인 적용 일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
	○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웨비나 - '26.12월 EUDR 본격 적용에 앞서 제도 주요 내용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 기업의 이해도 제고
	○ [2026 글로벌 신통상 포럼] EU 통상규제의 본격 시행과 기업 유의사항 - EU의 역내 경쟁력 강화 기조 및 핵심 통상규제의 주요 동향,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소개